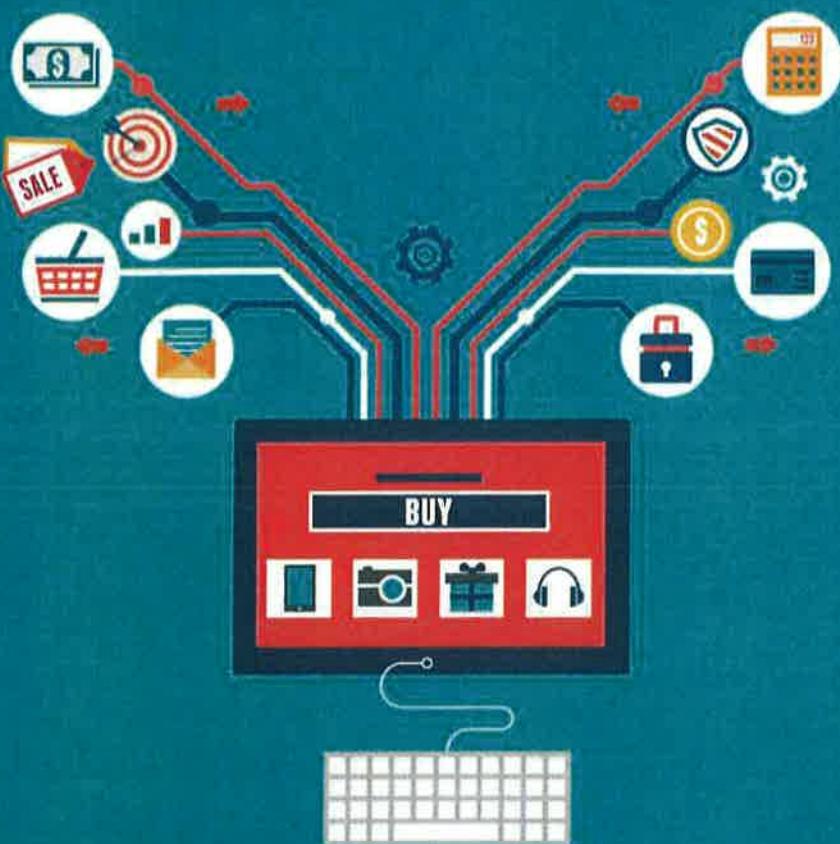


“易于上当的
电子交易等领域的
消费者保护法”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I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계약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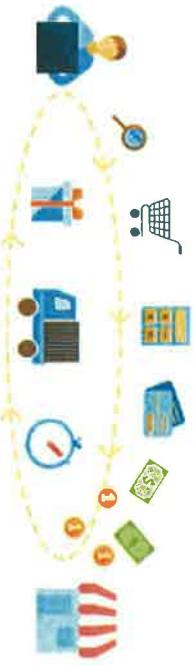
(2002.3.30. 제정, 2002.7.1. 시행)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 배경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원격거래라는 특성상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발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등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를 가려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는 미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다음 계약이 인도되는 경우 (이른 '전자급식 통신판매')가 대부분이어서 지연배송,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의 배송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과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연혁 | 주요 내용 |
|--|--|
| 2002. 3. 30. 제정
2013. 5. 28. 일부개정
2001. 1. 16. 시행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청탁불허 등 소비자 보호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연혁 | 주요 내용 |
|---|---|
| 1996. 5. 1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1. 1. 16. 시행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 이용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연혁	주요 내용
1999. 2. 8.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2012. 6. 1. 시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촉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II 주요 용어 안내

● '전자상거래' 란?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호)

: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 전자문서란,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 즉, 주문·결제·이행 기운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합니다.

● '통신판매' 란?

- 통신판매란, 사이버를 이용한 판매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광고수단에 자기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동 시행규칙 제3조)

: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관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게임중개몰 등

● '전자금식 통신판매' 란?

- 전자금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불 등을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 '구매안전 서비스' 란?

- ☞ 인터넷 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강의, 인터넷 게임 등
- 구매안전 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대금만 떠이는 시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선불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액*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법」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재무지급보증계약***
- : ③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조약

* 적용제외

- : ①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 ②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소비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기밀, 인터넷 강의 등)

- 선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선불결제수단* 이란, 사이버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미리 **다음을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전자화폐 · 전자상품권 · 선불카드 · 사이버머니 등)

- * 결제대금액*에스코로, Ecom·란, 금융기관 등 공산체 있는 제조사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상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인천정도를 말합니다.
(신한은행 · 한국사이버결제 · LG유플러스 · 올앳 · 아이나스 · 이지스 혼성 · 케이에스넷 등 제공)

- *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제공)

- *** 재무지급보증계약은,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재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거래 인천정도를 말합니다.
(서울은행 제공)



III 사업자의 사항별 준수사항

01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준수사항

● 누가 신고하나요?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매출액 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같은 통신판매업자가 별도로 소핑몰을 운영하려면 새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네요?

- ▲ 이 경우에는 신규 신고가 아니라 「인터넷도메인」을 추가하는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또한 민원과 (<http://www.miwon.go.kr>)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사항을 신고하나요?

- 신고사항
 - 상호·주소·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지자
 - 첨고사항(판매방식·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서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통신판매업자가 동의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
 -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정보는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에 공개합니다.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별도로 업종·업태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이버를 등을 통한 판매가 금지·제한되는 내용을 정하고 이를 유린할 경우 저널로드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대상	비고
판매	급매 (임대사업법 제12조 제4항)	전자상거래 포는 통신판매에 의한 판매 금지
판매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의약품 (의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판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6조)	도수 있는 인경, 몬텍트란즈
판매	음란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인터넷경상 판매금지
판매	상표권 침해 물품 (상표법 제65조) 저작권 침해 물품 (저작권법 제123조)	승인 대상
판매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유지 고시) 음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흡연기·석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허가 대상
판매	유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및 제34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또는 허가 대상
판매	외로기기 (외로기기법 제17조 제1항) 청소년유해콘텐츠, 청소년유해언어,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28조)	신고 대상
판매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02 개인정보 관련 준수사항

● 사이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사이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신원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신원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를 이용약관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 통신판매업자는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통신판매업자가 정부를 받을 목적으로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 광고에 다음 시장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2항)

: 구매번호가 높은 재화 등(총 3회 향목)에 대하여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친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 재화 등의 궁금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시장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의 기한·형사방법·효과
-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자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및 절차
- 소비자 피해보상규리, 불만 처리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시장
- 약관 및 구매안전서비스 등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보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친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의 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8조)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지화 등의 내용 및 종류
- 지화 등의 기액
- 용역의 제공기간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고지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 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표준결제창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취소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으면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기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3항)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매월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지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 별로 거래 내역·이용요금·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주문한 자에게, 전자결제업자 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통지합니다.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직접 통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통의함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03 제화의 공급 관련 준수사항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제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이 포함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제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동의하거나,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失없이 계약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화 등을 공급 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완결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내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내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내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공급에 필요한 조치란 반드시 공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A 공급에 필요한 조치'란, 출고나 배송 등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말하며,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공급이 완료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주문제작의 경우에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②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체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화 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제화 등의 공급이 관련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04 청약철회 등 관련 준수사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공급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3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

-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재화 등을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계약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2014.9.16. 10:30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다음 소비자가 2014.9.23. 16:30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청약철회가 인정되나요?

A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 함은, 민법 제 157조에따라 공급을 받은 당일을 제외하고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2014.9.23. 2400까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인정됩니다.

- 소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사건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환불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통신판매업자가 위 ②~④의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사항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은 재화 등의 번호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 다만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는
 ① 재화 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드는 비용,
 ② 다수의 동일한 기분류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는
 ① 재화 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드는 비용,
 ② 다수의 동일한 기분류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구매사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원」)

: 다만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는
 ① 재화 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드는 비용,
 ② 다수의 동일한 기분류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

●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 현금(체크이체 포함) 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청탁하거나 최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기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

●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때에는

- ①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로 또는 통상 사용이익
- ②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가운데 큰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계약 금지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청약철회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05 기타 준수사항

● 사업자는 적립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원')

● 사업자는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① 이용조건·이용기간·소멸조건·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② 행사 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홍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이란, 회원가입이나 제화 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볼문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원' II. 10. 가)

● 사업자는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내용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전부터 초기회면 또는 초기회면과의 연결 회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원')

적립금 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이버몰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이버몰 등에서 통용되는 통화기준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원' III. 4.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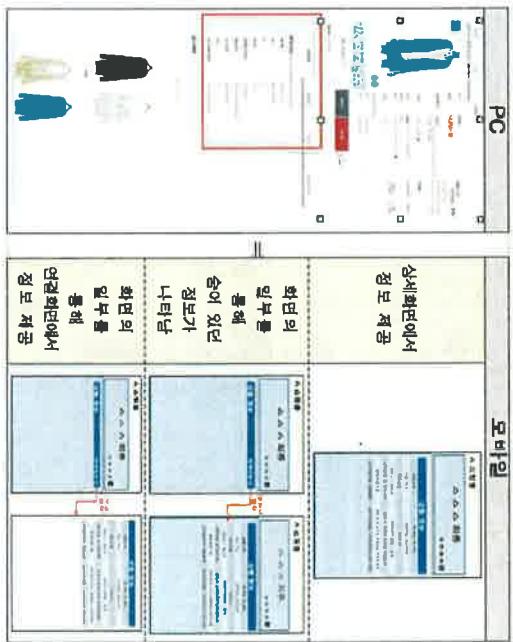


IV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준수요령

● 모바일 쇼핑을 사업자의 신원정보 및 상품정보 등 제공

- PC와 미천기자로 사업자의 신원정보 및 상품정보 등을 쇼핑몰의 초기화면 또는 상품의 상세화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비자가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에서 화면의 일부를 통해 ①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거나, ②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면 됩니다.



●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청약철회 및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제공

-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의 절차도 모바일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모바일에서 결제한 내역(재화의 내용·종류·가격 등)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민원 제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가 용이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및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VI 금지행위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2조)

: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일리거나 기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탁불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② 청탁불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소비자의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때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⑥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지를 위해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

⑦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우반행위에 관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등 시행령 제35조)

● 당사자가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3조 제3항 제2항 및 제3항)



VII 제7장

01 행정적 제재

시정권고 (전지성거래법 제33조)

-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관행위의 종지, 의무의 이행, 필요한 조치의 이행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

: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시정조치 (전지성거래법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관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②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에게 방지가 험해하니 근본 험하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 (전지성거래법 제34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걸음하여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과되는 과징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다만,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 ① 해당 유관행위의 종지
- ②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 ③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④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⑤ 그 밖에 유관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다만, 유관행위가 특정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해당 우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 해당 우반행위와 상당연교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

③ 해당 우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 해당 우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

*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자
-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
-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
-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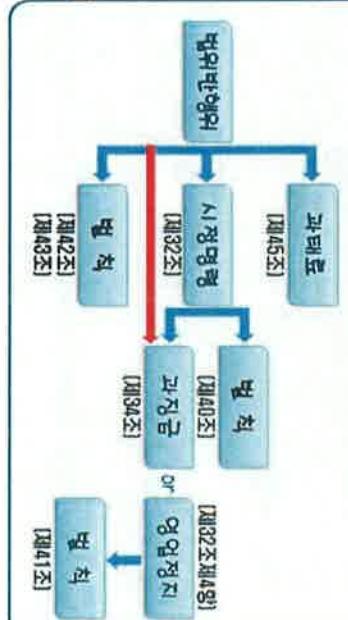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사업자의 신문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면경신고, 휴·폐업 및 영업제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계약내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01 형사벌

[법 위반 제재조치 절차]

제재조치 (법 제32조 등)



-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법 제4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법 제40조)

- 영업정지 명령을 무방비하여 영업을 한 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법 제42조)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비자 피해 보상·보합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보합 계약 등을 체결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법 제43조)

-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업자의 신용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면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 양벌규정 (전자상거래법 제44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40조부터 제43조 까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